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9월 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13. 12. 12. 시행)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임용령,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, 지방전문경력관 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해당사항 없음

(2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) : 해당사항 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해당사항 없음
- (5) 갈등조정담당관 (공공갈등진단) : 해당사항 없음
- (6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4. 4. 3. ~ 4. 23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